

'해외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Monthly Newsletter VOL.17



EU, 공공부문의 친환경차량 의무구매 요구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수송분야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차량' 시장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침안(COM (2005) 634)을 정식 제안했다. 이 지침은 공공 기관에 대해 연간 구매차량의 25%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운송부문 확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배출 및 석유의존도 심화문제로 인해 그간 집행위는 친환경차량 시장 축진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EU 전체로 볼 때, 도로운송 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 효율개선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술 적용시 원가부담이 크고, 적정 시장 규모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친환경 차량의 시장출시가 늦춰져왔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연료소비가 적고 오염배출이 적은 차세대 차량 개발을 촉진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고, 그 조치로서 공공부

문에 대해 일정비율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지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3.5톤을 초과하는 중량차 연간 구매량(리스 포함)의 최소 25%를 enhanced environmental friendly vehicles (EEV)로 구매해야 한다. 버스와 쓰레기 수거차와 같은 공공차량이 적용대상이다. EEV는 지침 2005/55/EC에서 정의되는 친환경차량으로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EEV 배출기준은 자발적 기준으로서 유럽이 설정한 가장 강력한 해당차종 배출가스 기준이며, 2008년에 도입될 Euro5 배출수준보다 더 낮은 배출기준이다. EEV로는 친환경 디젤차량, CNG, LPG 또는 수소연료차량,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량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량 의무구매는 일단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높은 중량차량에 한하여 시작하고, 해당 차량의 수요창출을 통해 자동차 메이커들의 친환경차량 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집행위는 향후 두 번째 단계로써 이러한 의무구매 대상을 다른 차종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 지침 시행으로 EU가 최근 추진중인 바이오 연료 사용 촉진정책과 함께 바이오 연료 함량이 높은 연료에 적합한 자동차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EU 측은 기대하고 있다.

출처 | EU 집행위

CONTENTS

헤드라인

1 EU, 공공부문의 친환경차량 의무구매 요구

신년사

2 박선숙 환경부 차관
2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해외동향

3 캘리포니아, 프탈레이트 3종을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
3 EU 집행위, 경량차량 Euro 5 기준 정식 제안
3 중국판 RoHS법안, 그 모태인 EU법규와 다르다
3 영국, WEEE지침 이행 또다시 연기
3 대만, 수은함량 5ppm 이상인 배터리 판매 금지 추진
3 독일, 웹기반 REACH 정보제공 시스템 개설

Trade & Environment Outlook 2006

6 큰 파도, 큰 바람은 또 하나의 기회
6 2006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 전망

전문가 리포트

9 영국의 RoHS 적용
9 그린마케팅에서 지속가능성 마케팅으로
9 에코머티리얼 개요 및 일본의 개발 현황

새 간행물

14 "우리가 알아야 할 REACH"- 환경부 발간 REACH 해설서

주요단신

15 독일, 올해부터 의료기구에 HCFCs 사용 금지
15 EU, 2007년 6월부터 접착제 등에 톨루엔과 트리클로로벤젠 사용제한
15 일본, 일본판 RoHS법안 WTO에 통보
15 EU, 자동차 재활용 형식승인지침 발효

관련 국제회의의 정보

1

2

3

6

9

14

15

16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을 위한 제도정비 강화할 터

박선숙 환경부 차관



병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는 교토의정서 발효 등 세계 시장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환경 규제질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올해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EU와 중국은 올해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과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을 각각 시행합니다. 지구촌은 이제 디자인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에서 환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환경 규제질서를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변화의 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미리 준비해서 대응체계를 갖춰 놓는 일을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이후는 수월한 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일이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더 빨리 잘 준비하면 곧 새로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새로운 환경규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TRA와 유기적인 정보수집·전달체계를 구축해 매월 '해외환경규제동향'을 발간한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입니다. 또 2005년 5월에는 시스템(무역환경 정보시스템, www.ten-info.com)을 구축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수요를 촉진하고 시장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제품인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해외환경규제라는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환경규제동향'의 독자이신 기업인 여러분, 지난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술년 한해도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범국가적인 환경경쟁력 강화의 초석으로 활용 필요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희망의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현상의 빈발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인도양을 강타한 쓰나미와 같은 사상 초유의 지진·해일이나 최근의 기상이변도 지구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채택·발효되었으며, EU 등 선진국은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기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EU 등 선진국의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기준 강화와 같은 전세계적인 환경보호 활동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수출업체의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경련은 이러한 국제환경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공동으로 '무역·환

경정보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국의 환경규제 동향을 월간 해외환경규제 동향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best practice)의 산업계 확산, 지속가능발전 과제에 대한 산업계 실천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및 환경정책 방향 제시 등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단체들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오염물질 배출저감과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는 물론 기업의 대내외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건승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프탈레이트 3종을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해성평가소(OEHH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가 3종의 프탈레이트를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인 Proposition 65 목록에 새로이 추가했다. 이들 3종은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n-butyl phthalate (DBP) 및 di-n-hexyl phthalate (DNHP)이다.

프탈레이트는 가소제, 즉 합성수지의 유연성을 좋게 하는 첨가물질로 사용되지만, 인체의 내분비계 기능을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어서 이미 유아용품 및 식품용기 등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EU,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Proposition 65는 'Safe Drinking Water &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에 따라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이나 번식에 해를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역내에서 제조, 판매, 공급하는 것을 규제하며, 매년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 목록이 업데이트 · 공표된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해물질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5년 12월 2일 이후,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해당 사업자는 작업환경에 노출되거나 제품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노출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수준이 안전함을 증명하거나 또는 경고문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OEHHA는 일부 등재물질에 대해 경고문구 부착이 요구되는 노출안심수준(safe harbor level)을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보다 노출위험이 크다면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경고문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아직까지 모든 등재 물질에 대해 이러한 노출안심수준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계속해서 추가할 계획이다.

출처 | 캘리포니아 OEHHA



EU 집행위, 경량차량 Euro 5 기준 정식 제안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2월 21일, 경량차량의 새로운 배기 가스 배출기준인 Euro 5 기준을 제시한 규칙안(COM (2005) 683 final)을 정식 제안했다. 제안된 Euro 5 기준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Euro 4에 비해 디젤차의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과 질소산화물(NOx)을 각각 80%, 20% 저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휘발유차량의 기준은 NOx와 탄화수소(HC) 모두 25% 정도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된 기준안은 작년 7월에 초안이 발표되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Euro 5는 이르면 2008년 중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안된 기준은 특히, 디젤차량의 PM과 NOx 배출저감을 우선목적으로 하여 설정됐다. 또한 현재 중량차량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형스포츠차량 및 SUV경량차량을 경량차량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 여름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을 받았으나, 초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발표된 기준에 대해 환경단체인 유럽환경운송연합(T&E) 등은 제시된 안 그대로 채택될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용보다 더 오염배출이 많은 차량이 역내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스모그와 호흡기질환 및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NOx 기준에 주목하고, 이번에 집행위가 디젤차량의 NOx 최대 허용기준을 주행거리 1km 당 200mg (200mg/km)으로 설정 · 제안한 반면, 미국은 2007년부터 해당 차종 NOx 기준으로 훨씬 강화된 87mg/km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제시된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의회와 각료이사회 독회과정에서 집행위(안)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수정 ·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EU 집행위, T&E

[단위 : mg/km]

구분	적용시점	휘발유 차량		디젤차량	
		HC	NOx	PM	NOx
Euro 3	2000.1부터	200	150	50	500
Euro 4	2005.1부터	100	80	25	250
Euro 5 (안)	2008년(예상)	75	60	5	200



중국판 RoHS법안, 그 모태인 EU법규와 다르다

중국판 RoHS로 알려져 있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안)'은 2004년 그 초안이 발표된 이후, 전세계 전기전자 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 제정의 모태가 된 EU RoHS지침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제품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안은 중국이 지난 9월 말, 세계무역기구(WTO) 기술장벽위원회(CITBT)에 법안을 통보하여 회원국 회담을 거침으로써 이제 법 제정 공표가 임박했다.

애초 법 초안에서는 EU의 RoHS지침과 동일하게 전기전자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6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그대로 채용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WTO에 통보된 법안을 살펴보면 EU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EU 법규 모두 수입제품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유사점은 여기까지다. 중국 RoHS에 포함된 일부 규정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포괄적 규정이라는 점과 EU의 RoHS지침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 및 라벨링, 포장재 및 생산공정에서의 물질제한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법규에 대한 별도의 적합성 증명노력이 요구되는 부담이 있다.

첫째, 핵심규정인 유해물질 제한과 관련해서 중국 법안은 EU에서 제한하는 6대 유해물질 이외에 추가적인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될 규제 유해물질이 추가될 가능성이 많다. 별도의 목록 공표를 통해 세부 규제대상 유해

물질과 시행시기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실제로 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은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보다 훨씬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EU RoHS지침에는 없는 정보공개 및 라벨링 의무, 포장재 및 생산공정 유해물질 제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함유 유해물질명과 그 함량, 제조원산지, 제품 안전사용기간 등을 정해진 포맷에 따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EU법규에서는 생산공정과 관련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데 비해, 법안 제10조에서 생산자에 대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적인 재료와 기술 및 공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생산공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셋째, 법규 만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EU가 생산자의 자체 선언 방식을 요구할 방침인데 비해, 중국은 시장판매 전에 해당제품에 대해 시험분석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인증 받도록 하는 사전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 수출할 제품은 세관통관 이전에 심사를 받게 되며,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허용된다.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EU 보다 더 강화된 법규 제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평가다. 아직 최종적으로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이 공표된 것은 아니며, 최종 공표까지 일부 보완될 가능성은 있다. WTO 통보문에서 중국은 2005년 12월 31일을 공표일로 제시했다. 제시된 일자에 법 공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06년 상반기중에는 공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일부 규정이 최종 채택법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규정될지 주목된다.

출처 | WTO, Green Supply Line, DCA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안)과 EU RoHS지침 비교]

	EU RoHS지침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공표시점	2003년 12월	2005년 말 또는 2006년 초 예상
시행시기	2006년 7월 1일	2006년 7월 1일
대상품목	WEEE 지침 적용품목 중 8개 품목군	전자정보제품(세부 적용품목은 별도 목록으로 공표예정)
요구사항	적용대상 제품은 지침 해당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불이행시 법적 제재조치 대상이 됨	생산자에 제품 라벨링 규정 의무이행 요구 유해물질제한 이행시기는 늦춰질 전망
의무이행주체	지침 제4조에 규정된 제품의 생산자	명기되지 않음. OEM사, 유통업자 및 심지어 부품공급 협력업체까지도 직접 의무부담 가능성 존재
적합성 증명	기업의 자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품 적합성을 자체 증명하는 방식 인정.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때 감독기관이 사후관리	수입통관시 적합성증명을 위한 시험분석 실시 중국 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해서 재수출되는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음
규제대상물질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6대 유해물질 및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 (규제대상 세부 유해물질 목록은 따로 규정)
예외사항	있음. 특정 용도에 대해 예외 인정	없음. 향후 예외사항 반영 예상
라벨링 규정	없음	제조 원산지, 유해물질명 및 함량, 포장재 원료목록, 제품안전사용기간 등 라벨링 의무사항 규정
법규개정검토	4년마다	매년



영국 WEEE지침 이행 또 다시 연기

영국이 폐가전처리지침(WEEE) 국내 이행을 다시 한번 연기한다고 무역산업부(DTI)가 지난 12월 15일 발표했다. 영국은 이미 지난 가을 WEEE지침에 따른 생산자의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시행을 2006년 6월로 연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 다시 이행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DTI는 이날 WEEE지침 국내 이행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작업을 내년 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생산자 재활용책임 의무화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DTI 에너지장관은 이번에 다시 WEEE지침 이행 연기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영국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WEEE지침의 효과적 이행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준수 주체인 생산자와 소매업자, 폐기물처리업체 및 정부가 함께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기반구축 및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관련해서 우리는 산업계 등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지침 이행을 위한 영국의 준비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에 귀를 기울여 왔고, 해당 지침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WEEE지침의 영국 내 이행을 또 다시 연기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라는 법 제정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라고 확신한다.”

DTI는 환경식품농림부(Defra)와 환경청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WEEE지침 영국 이행법안 및 그 이행 가이드에 대한 의견수렴 등 검토작업을 2006년 봄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영국 환경청은 생산자에게 폐가전 회수처리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환경보호로 연결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적절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DTI가 추가적인 협의 및 검토작업을 실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환경청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작업 진행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EE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폐가전의 분리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생산자는 폐가전 무료 회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설정된 재활용 및 재생 목표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번이 세 번째인 영국정부의 WEEE지침 이행 연기 발표에 대해 영국 내 관련 산업계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일부 기업은 이전에 제시됐던 시행일에 맞춰 준비해온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출처 | 영국 DTI, 영국산업연맹(CBI)



대만, 수은함량 5ppm 이상인 배터리 판매금지 추진

대만이 수은함량 5ppm 이상인 특정 배터리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은으로 인한 인체건강 및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폐기물처분법(Waste Disposal Act)’을 근거로 제안된 이 규칙에 따라 최대 수은 함량치 5ppm을 초과하는 특정 배터리(일차 망간배터리 및 알칼리 배터리)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2006년 7월부터 금지된다.

적용대상 배터리의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는 주무기관에 적합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 또는 제품 포장에 대만 환경청(EPA)에 의해 수은함량 5ppm 이하임이 확인된 제품임을 알리는 문구 ‘本產品內電池汞含量低於 5ppm’와 사전승

인 후 주무기관이 부여한 승인번호를 표기하는 라벨링 의무가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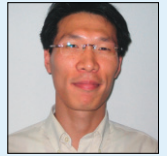
일차 배터리 사용은 전자기기 및 소비자제품 사용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배터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수은함유 배터리의 경우 분리배출 후 적절하게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은이 환경으로 방출되어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최근 각국이 이러한 수은함유 배터리 사용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경우 2000년부터 이미 수은함량 5ppm을 초과하는 배터리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 | 대만 EPA, Intertek Labtest



→ 큰 파도, 큰 바람은 또 하나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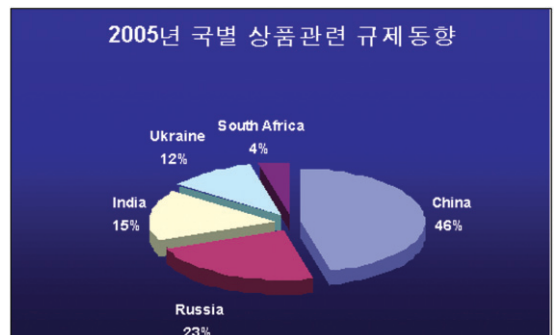
ENHESA, Legal Consultant 박대영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 첫 출발인 만큼 밝은 면에 대한 언급으로 화두를 삼고자 한다. 2005년 10월 28일에 마감된 제3차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Directive 2002/95/EC)의 예외적용에 관한 의견수렴기간 제출된 총 29개의 의견서 중에서, BLU (back light unit) 제조에 사용되는 납(lead in seal frit)에 대한 예외적용 추가 데이터를 제출한 삼성코닝과 요업(세라믹)기술원, 삼성 SDI와 LG전자의 PDP (plasma display panel)에 사용된 납(lead in lead oxide glass)의 예외적용 요구를 대변하여 전달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의견서 등 총 3개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 보여진다(USS-POSCO의 의견서 제외). 법적 공신력이 있는 문건은 아니나, 2005년 11월 10일에 제출된 ERA Technology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BLU 제조에 사용되는 납에 대한 예외적용 요구를 하고 있는 삼성코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정 시장 및 국가에서 일정한 이해관계자로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기업활동에 주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한 예로 간주된다. 현재 2006년 2월 10일을 마감일로 한 제4차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 지침의 예외적용에 관한 의견수렴이 15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로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요구가 유럽연합 측에 반영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2005년은 또한 'BRICS', '친디아' 라는 용어가 유행한 한 해가 아닌가 싶다. 주지되듯이,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디아 등은 거대한 시장잠재력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주요 투자 무대임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이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한국기업의 기업활동, 남아프리카에서 크로켓 스폰서를 통해 엄청난 브랜드효과를 이룬 LG전자의 이야기를 하는 동료 등, 세계시장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한국기업들의 이야기가 바로 옆에서 들려온다. 뿌듯함과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어려움에 대한 공통분모를 단순화시켜보면, 다양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준비와 대응의 결여이다. 모든 국가가 한국적일 수 없고, 한국이 빨리 변하고 있듯이 다른 국가도 빨리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언어적 장벽과 국가 시스템적 장벽을 비용적 한계로 인해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체적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인식 하에 2005년 위에 언급된 국가들의 법률동향과 2006년 및 그 이후의 법률방향에 대해 요약해 보았다.



도표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동시에 고질적인 환경오염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이 2002년 1월 10일 발표된 '제10차 재생자원회수이용 5개년 계획(再生资源回收利用十五规划)'을 충실히 수행하여, 거의 계획한 바대로 선진적 환경규제시스템을 갖추어 간다는 것이다(예, 입법 예고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규정, 전자폐기물환경오염관리규정, 폐가전제품회수이용관리규정 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05년 11월 28일에 발표된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제11차 전국환경보호법규건설계획(十一五全国环境保护法规建设规划)'은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의 환경경영에 있어 상당한 위협요소로 다가온다. 위의 제11차 계획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원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법, 환경책임법, 위험물질사고응급·보상관리책임법, 유해유독화학물질관리



[2006년 및 그 이후 전자제품관련 중국환경규제]

주관정부기관	2006-2007년에 발표될 주요 규제 항목	근거법령	
정보산업부(MII)	주요관리대상전자제품목록 공포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규정 (2003년 12월 10일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재활용 및 오염방지에 대한 표창제도 확립		
	제품 중 유해물질명칭 및 함량 등에 대한 표시		
국가질량총국(AQSIQ)	주요관리대상전자제품 중 유해물질검측 표준 제정		
정보산업부, 국가질량총국	제품 중 유해물질 제한치에 대한 국가표준제정		
정보산업부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도태제도 및 시한 제정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성에 대한 3가지 구분표시		
	안전사용기한 표시		
국가환경보호총국 (SEPA)	전자폐기물목록 공포		전자폐기물환경오염관리규정 (2005년 9월 21일 입법예고)
국가환경보호총국, 지방환경보호국	전자폐기물의 생산, 저장, 처리 등에 대한 보고		
지방환경보호국	전자폐기물의 회수, 저장, 해체, 사용, 처리 등 관련업자들의 등록		
국가환경보호총국	전자폐기물의 회수, 저장, 해체, 사용, 처리 등에 대한 기술정책,		
	기술규범 및 표준 제정		
	전자폐기물의 공동 및 개인회수제도 마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폐가전제품목록 공포	폐가전제품회수이용관리규정 (2004년 9월 7일 입법예고)	
지방정부	폐가전제품 회수 및 처리에 대한 조정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마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폐가전제품의 처리에 관한 기술규범 및 표준 제정		
	폐가전제품에 의한 오염방지 정책 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량총국	중고가전제품의 안전표준, 성능표준 및 표시사항 제정		
	중고가전제품의 해체에 관한 기술규범 제정		
지방정부	폐가전제품의 지역 회수 및 처리 프로그램 마련		

법, 토양오염방지법,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규정, 특정 제품 및 포장재 수거·재사용에 관한 규정, 기업환경정보공개규정, 폐기물 수입에 관한 규정, 폐기물 수출에 관한 규정, 위험 폐기물목록 등 38개 법률, 48개 행정규제, 그리고 87개 환경 규제에 대한 개정, 수정, 보완, 제정 등의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규정 강화는 기존 중국정부기관들의 법률집행이 강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묵인되며 이루어졌던 기업생산활동에 대해 큰 위협요소로 다가올 것임이 명확하다.

인도의 경우, 현재 정책적 또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문건은 없으나, IT산업의 중심지인 방갈로르(Bangalore)의 기업관계자들에 의해 폐전기전자제품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방갈로르에서만 연간 8,000톤의 폐컴퓨터 관련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됨). 2003년에 수정된 위험폐기물관리규정이 전기전자폐기물의 수출입만을 규제하고, 폐기물의 관리측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에는 공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2006년 중에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측에서 전기전자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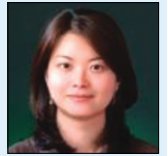
주요 수출시장 중의 하나이자 강력한 환경규제들로서 수많은 이목을 집중시킨 유럽연합 및 기존 15개 회원국, 한국기업들의 주요 진출 무대이자 유럽연합의 규제를 빠른 속도로 흡수해야 하는 동유럽 신 10개 회원국, 선진 환경규제를 공격적이라고 할 만큼 자체시스템으로 이식하고 있는 중국, 어느 곳 하나 만만하게 볼 시장이 없다. 이는 한국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일차적 장벽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장벽을 넘은 후, 시장 및 시스템(환경규제적 요소를 포함)의 변화에 따른 적시적절한 대응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기업만이 아닌 모든 시장 경쟁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신속히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리라는 것은 지당한 결과라 할 것이다.

2006년에는 유럽진출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규제에 대한 15%의 의견이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에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조율되고 통합된 기업들의 의견이 기업연합체를 통해 조화되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충실한 준비작업으로 그 피해가 최소화되고 국제환경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한국기업이 없기를 바란다.



➔ 2006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 전망

환경부 지구환경과 배연진 사무관



격렬한 NGOs 시위와 다자무역 협상방식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과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지난 12월 18일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막을 내렸다. 합의된 선언문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분야의 세부협상방식(modality)을 제시하는 59개 조항과 6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상반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세부협상방식이 완전하게 합의될 예정이다.

무역환경 분야도 올해 작업방향에 대한 선언문이 합의되었는데, 2001년 DDA에서 합의된 환경의제 제31조 1~3항 협상 진행상황을 기술하고 회원국이 협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DDA 무역환경 협상의제 〉

- 제31조 1항 : WTO 자유무역규범과 다자간환경협상 특정무역의무의 관계
- 제31조 2항 : 다자간환경협약 사무국과 WTO 위원회간 정례적 정보교환
- 제31조 3항 :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무역자유화

2005년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 경과

이중 올해 회원국의 협상력이 집중되고 우리가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협상의제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이다. 먼저, 작년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을 살펴보면 7월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카타르, 대만, 일본, 뉴질랜드, EC, 미국, 캐나다, 스위스 9개 회원국이 환경상품을 제안하여 약 500여개(HS코드 6단위 기준)이상의 환경상품이 협상 대상으로 고려되었다. 이는 개개의 상품을 선정하여 무역자유화 대상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하는 리스트 접근방식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 협상의 주류를 이끌었다. 그러나 6월부터 인도가 협상에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리스트 접근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가 연계된 프로젝트를 일정기간 무세화하는 프로젝트 접근법을 제시하게 된다. 동 접근법에 개도국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흐름이 양분화되어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었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도국의 협상 지연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6년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 전망

이러한 협상과정 이후 도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은 “제31조 3항 관련, 많은 제안서가 제출되고 비공식 정보교환 및 기술적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식하며, 회원국들이 동 작업을 조속하게 완료할 것을 지시한다(We instruct Members to complete the work expeditiously under

paragraph 31(iii).”로 합의되었다. 이 문안은 환경상품 리스트 접근법과 협상시한을 명확히 하지는 선진국과, 프로젝트 접근법 및 개도국 이해반영을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는 개도국이 홍콩 각료회의 기간 동안 팽팽하게 대립하여 양 입장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결정되었다.

단순히 협상결과인 선언문만을 보면 환경상품 자유화와 관련된 세부협상방식이 부족해 올해 환경상품 협상 진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홍콩 각료회의의 동안 개최된 환경프렌즈(환경상품 무역자유화 관심국 모임) 및 선언문 도출 소규모 회의 전반의 분위기를 볼 때, 미국, 뉴질랜드



등 협상 주도국이 올해 후속 협상과정에서 리스트 접근법을 좀더 구체화해 발전시켜 나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세부 이행방안이 부족한 프로젝

트 접근방식은 자연도태 되고 리스트 접근방식으로 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상품 협상 결과는 NAMA로 넘겨진 후 완전 무세화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데, 홍콩 각료회의의 선언문에서 NAMA 세부협상방식 및 양허안 초안 제출시점을 명시되어 있어 환경상품 협상도 함께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 방향

우리나라는 환경상품 자유화가 세계 환경상품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상품 수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말부터 관련업계, NGOs, 부처간 협의를 통해 OECD-APEC 환경상품 172개 중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환경상품 89개를 선정하여 작년 2월 WTO에 제출하였다. 또한 리스트 접근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에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출된 500여개 환경상품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다.

맺음말

일반상품에 환경가치를 부여하여 미래세대의 후생까지 고려하는 환경상품은 협상여부를 떠나 전세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DDA 환경협상을 새로운 시장진출과 지구촌 환경보호,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민관 여러 분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영국의 RoHS 적용 – DTI RoHS Guidance –

LG전자 최광림 부장



RoHS 규제 시행을 8개월 가량 앞두고, 규제 당국인 영국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산업계의 원활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11월 RoHS Guidance를 발간·배포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른 EU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해석/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많은 규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석 및 그에 따른 대응은 개별 생산자의 법률적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RoHS지침은 회원국별로 세부 입법 및 시행 방안이 다른 WEEE지침과 달리, 25개 EU 회원국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 시점에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사항은 4종의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과 2종의 브롬계 난연제(PBB, PBDE) 중 하나를 함유한 제품은 200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 출시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제품의 수리 및 재이용을 위한 비친환경 부품의 사용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DTI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de & Industry)이 RoHS 규제 시행 관련 총괄 책임을 맡고, 실무 집행기관으로 국립도량형연구소(NWML,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를 지정해 운영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적용제의 제품

RoHS지침 자체만으로는 규제적용 대상 제품과 비대상 제품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영국 DTI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WEEE지침에서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기가 주동력원이 아닌 내연기관, 제품의 보조기능 발현에 전기가 사용되는 장난감인형, 다른 설비/기기의 일부부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비대상으로 해석된다. 배터리는 별도 지침에 의해 2008년부터 규제가 예상되므로 제외된다.

Put on the market

'Blue Book' 으로 통칭되는 EU집행위원회의 'Guide to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based on the New Approach and the Global Approach' 에 언급된 'placing on the market' 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placing on the market' 이란 역내에 제품이 유통되는 관점에서 역내시장

(community market)에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최초의 행위를 말한다. 즉, 역내시장에 판매 혹은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단계로부터 '이전'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유입된 제품도 포함해 '이전' 은 다음의 경우가 각각 해당된다.

- 제조자(혹은 역내 제조자의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로부터 역내 수입업자(혹은 역내시장에 제품 유통의 책임을 갖는 개인)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이전으로 간주된다.
- 물리적 양도, 소유권 이전, 판매, 대여, 임차 및 선물도 제품 이전으로 간주된다.



규제준수 판정

영국의 경우, 생산자는 규제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 문서와 자료를 통해 제품이 RoHS지침에 부합됨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자기선언' 을 규제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규제당국은 규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검출하기 위해 '시장감시(market surveillance)' 를 실시할 것이고, 이런 목적의 분석을 실행할 수도 있다.

현재 기준에 만족함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생산자들은 물질선언과 부품 또는 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런 기능을 할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한다. 생산자는 소재, 부품, 어셈블리 및 기기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급업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은 제품 시장출시 후 최대 4년간 보존돼야 한다.

영국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생산자는 스스로(혹은 제3자 기관에 요청하여) 제품에 사용된 소재 및 부품을 분석할 수 있고, 이는 공급업체의 물질선언을 검증하거나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검사하거나, 물질선언이 불가능할 경우 실행될 수 있다. 물질선언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도 가능하다.

생산자 및 제3자 위탁기관은 제품의 6대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적용한 분석기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 한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속

실제 규제준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규제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구매 & 검증

(p15 하단에 계속)

→ 그린마케팅에서 지속가능성 마케팅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최 선 교수



그린마케팅의 개념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은 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마케팅 개념, 즉 마케팅과 환경의 결합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그린(green)'이란 용어는 1973년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통해 그린운동(green movement)을 제창한 슈마허가 새롭게 사용하면서 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로부터 green consumer, green product, green marketing과 같은 용어들이 파생되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린마케팅은 환경마케팅(environmental marketing), 생태마케팅(ecological marketing) 또는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지속가능한 마케팅(sustainable market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표현만큼이나 학자들의 그린마케팅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 역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린마케팅을 '환경보전과 관련된 기업의 제반 마케팅 활동'으로 보는 관점은 공통적이며, 그린마케팅을 전통적 마케팅에서 구별하는 관점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린마케팅 개념의 또 다른 정의

마케팅학자 Regis McKenna는 1991년 그의 저서 'Relationship Marketing'에서 마케팅을 'market + ing', 즉 '시장에서 하는 행위 전부'라고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대응하여 그린마케팅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정의가 가능하다. 그 첫째는 'green market + ing'으로 '녹색시장에서 하는 행위의 개념'이 될 것이고, 둘째는 'market + greening'으로 '시장을 녹색화하는 개념'으로의 정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표1] 전통적 마케팅과 그린마케팅의 차이점

	전통적 마케팅	그린마케팅
이념적 목표	- 소비자 효용과 기업 이익의 양립 - 경제적 균형 추구	- 자연 생태계 보존, 소비자 효용, 기업 이익의 조화 - 사회적·생태적 균형 추구
가치관	- 물질적 풍요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 - 경제적 성과의 극대화 - 성장 지향적 가치관	- 사회적 편익 향상에 의한 삶의 질 제고 - 지속가능성 유지 - 생태학적 가치관

* 출처 : 이병욱 외(2005), 환경경영, 513쪽

[표2] 친환경제품 성공사례

제품분류	성공 사례
Light Green Product	Persil 세제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refill 포장, 화장품회사의 과포장 개선, 코카콜라의 Pet용기 사용
Dark Green Product	신도리코 복사기 Spirio-4200시리즈의 토너 리사이클 시스템 친환경냉매를 사용한 지펠냉장고, 대우의 무세제 세탁기
Not Green-yet Product	P&G사의 Pampers,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

(1) 그린마케팅 제1세대

: 'green market + ing'

'녹색시장에서 하는 행위의 개념'으로써 그린마케팅은 여타의 세분시장인 녹색시장(녹색소비재시장과 환경생산재 시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에서의 사업기회 포착을 통한 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잠재적 녹색소비자와 산업소비자인 목표시장을 파악하고, 이 세분시장에서 경쟁우위 요인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실행하는 것이다. 즉 마케팅의 역할은 그린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유통판매 채널과 판매촉진 활동 및 가격 책정 등을 통해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1세대 그린마케팅은 환경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소비자 집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환경보호운동, 공해상품 불매운동, 소비자 고발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일반화시켜서 기업의 제품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활성화 되었다. 이 시대에 환경친화기업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핵심역량은 무엇보다도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서 축적되었다. 친환경제품을 통해 성공한 그린마케팅 사례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제품을 환경성에 따라 분류하면 Light Green Product(경미한 친환경제품), Dark Green Product(고도의 친환경제품), Not Green-yet Product(잠재적 친환경제품) 등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 그린마케팅의 핵심적 관점은 그린생산자와 녹색소비자로 구성되는 녹색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린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

불하며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녹색구매자가 충분히 존재하는 세분시장의 성장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J. Elkington과 J. Hailes가 1988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녹색소비자 가이드(The Green Consumer Guide)』를 통해 녹색소비자라는 용어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했으나,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아

직까지 실제로 친환경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있어서 '태도와 행위의 차이(attitude-behavior gap)'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갭은 환경친화적 기업에게 수익잠재력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그린세분시장에서의 퇴출전략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확장된 그린마케팅 개념 : 'market + greening'

그린마케팅의 목적은 환경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마케팅 활동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의 장기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며 아울러 기업의 장기적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모든 시장을 녹색화(market greening)하려는 노력이 폭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린마케팅의 경우 소비자는 물론이고 각양각층의 사회집단의 반응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의 녹색화는 시장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이룩될 수 있는 과제이다. 이 경우 기업의 역할은 이해관계자와의 접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활동을 통해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환경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시장을 녹색화하는 주역이 된다.

환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는 회사내부의 종업원과 주주, 투자자를 비롯하여 회사외부의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환경운동단체, 소매업체, 언론 등과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소비자를 총 망라한다. 특히 기업은 이제 소비자를 '합리적 경제주체'라는 가상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그린마케팅은 영역은 환경구조, 생활조건,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 모두를 대상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생활의 요구와 선호에 부응하는 모든 부문을 포함한다.

시장을 녹색화하려는 그린마케팅 관점에서 기업은 마케팅 믹스를 통한 마케팅운영적 차원(operative management level)의 그린마케팅 개념에서 탈피하여 경영규범적 차원(normative management level)에서 새롭게 '그린'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시장을 녹색화하려는 의지가 기업의 경영철학으로 기업문화에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전략적 차원(strategic management level)에서 그린마케팅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며 통제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린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이 그린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술적·경제적·물리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운영적 관점에서 기업은 환경지향적 제품의 개발, 환경이라는 생산요소의 가격결정, 폐기물의 재순환을 통한 역유통 시스템의 개발, 환경보전 선도 기업이미지 및 환경의식적 소비행동의 유발과 관련된 촉진프로그램 등 마케팅 믹스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성공적인 환경마케팅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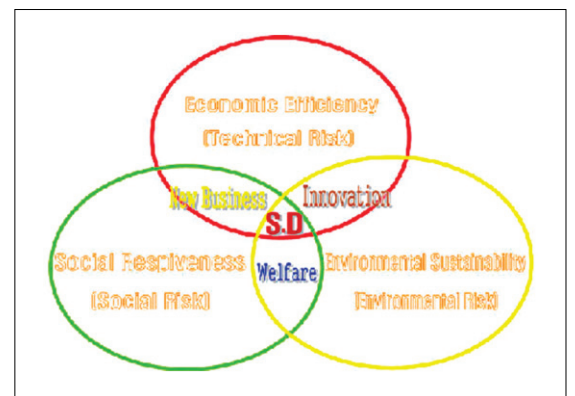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 즉, 친환경제품을 통한 블루오션 창출은

- 환경적 요인을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
- 그린마케팅 전략을 전체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고려
-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그린마케팅을 미래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에 반영
- 제품 및 기업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신뢰성 있는 환경정보를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활용

지속가능성 마케팅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추세를 감안하면 미래지향적인 마케팅전략으로 그린마케팅을 반영해야 한다. 21세기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기술적 경제적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부가효과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출발한다.

지속가능경영이 추구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효용성은 서로 별개의 전략으로 접근되는 기업목적이 아니다. 환경적 요인을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요인을 생산성 향상과 연결시킬 때 지속가능경영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여기서 (그린)마케팅의 역할은 친환경제품설계에서 재제조에 이르는 제품수명의 전과정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투명하고 그린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에코머티리얼 개요 및 일본의 개발동향



일본 도쿄대 Ryoichi Yamamoto 교수(좌)
Hong X. Nguyen 박사(우)

에코머티리얼(eco-materials)이란?

에코머티리얼이란 용어는 1991년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척도로서 일본의 아마모토 교수와 그 동료들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 재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전과정을 통해 환경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재료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에코머티리얼은 재료의 환경영향 최소화, 재순환 촉진, 에너지 효율 상승을 위한 재료과학, 재료기술의 주요 개념이다.

대만과 중국에서는 에코머티리얼이란 개념이 LCA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종종 LCA재료로 불리기도 하고, 북미와 유럽에서는 환경친화적(environmental-friendly) 재료 또는 환경선호적(environmentally preferable) 재료라고 불린다. 에코머티리얼은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추세인 제품 및 물질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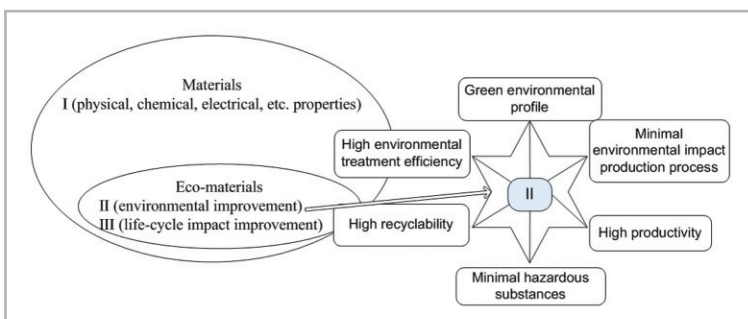
에코머티리얼의 특성

최근 일본의 에코머티리얼 포럼은 에코머티리얼에 대한 표준화된 개념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에코머티리얼 가이드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에코머티리얼을 위한 전제조건(그림 1의 I) 및 필수사항(그림 1의 II 및 III)을 만족하는 물질은 에코머티리얼로 정의될 수 있다. 전제조건에는 물리·화학적 성질의 최적화와 뛰어난 기술적 성능이 포함된다. 만족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재료 대비 환경개선효과가 현저할 것
- 전과정을 통해 환경부하의 상쇄효과(tradeoff)가 없을 것
- 만약 상쇄효과가 있는 경우, 환경개선효과 검증이 가능한 전과정 환경데이터가 존재해야 함

에코머티리얼의 전과정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있어야 하며, 그림 1에 제시된 6개 백터를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1개 이상은 포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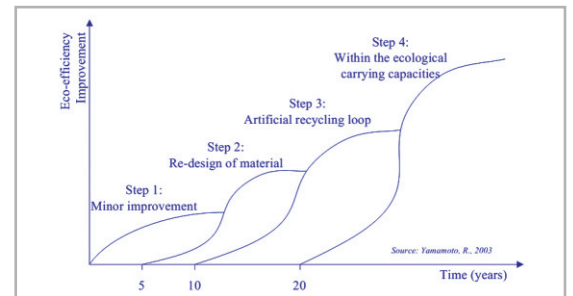
개념의 발전 : 4단계 모델



[그림1] 재료과학 관점에서의 에코머티리얼 개념모델

아마모토 교수는 에코머티리얼 발전 전략으로 4단계 모델을 제시했다(그림2). 이 모델에서 에코머티리얼의 개발은 지속가능 발전의 틀 안에서 4개의 명확한 단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에코머티리얼 개발은 폐재료의 재활용이나 안전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재료의 환경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다. 에코머티리얼 발전의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쉬운 재순환, 유효수명 연장, 환경친화적 대체물질을 사용해 전과정에 걸친 eco-efficiency가 최적화되도록 재료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 부문의 재순환 연결고리와 에코머티리얼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생태계 환경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경제·산업적 물질순환시스템과 자연적 물질순환시스템이 조화되도록 물질재료의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에코머티리얼의 발전은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고 있다.



[그림2] 에코머티리얼 발전 4단계 모델

산업계 개발 현황

최근 Nguyen 등(2004)은 금속, 시멘트, 화학 등 산업분야의 40개 이상의 일본기업이 2002년 발간한 환경보고서를 근거로 에코머티리얼 목록을 작성한 바 있으며, 여기서 총 441종의 에코머티리얼이 확인됐다.

일본의 경우, 이들 산업분야 중 금속분야(철, 비철금속 포함)가 에코머티리얼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에코머티리얼 개발의 절반 이상(52%)이 금속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 세라믹 및 유리분야(13%)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림3).

상업화된 에코머티리얼은 원료추득, 재료생산, 재료선정과 디자인, 제품생

산, 소비, 폐기, 6 단계를 포함하는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개념을 이용해 정성적으로 구분된다. [그림3]에서 보듯이 금속분야에서 대부분의 에코머티리얼은 마지막 두 단계인 소비와 폐기 단계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다. 중합체와 혼합물 분야에서는 각각 33.3%, 44.4%로 '재료생산' 부문이 환경개선에 고려되는 주요 단계이다. 이와는 달리, 세라믹과 유리산업은 '제품생산' 단계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천연자원 산업분야에서는 '원료취득'과 '재료생산' 단계에 주안점을 두고, '폐기' 단계 또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원재료의 이용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를 필요 없게 할 수도 있음에 기인한다.

금속산업 분야에서, 에코머티리얼 개발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사항에 초점을 맞춰왔다. 첫째,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금속, 이를테면 무연, 무크롬 철강 등에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 둘째, 유해물질 프리(free)에 관한 이슈에 추가적으로, 철강 생산공정의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세척공정이 필요치 않거나 또는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공정이 등장함으로써 철강 생산이 용이해졌다. 셋째, 철과 기타 금속산업은 또한 소비단계에 중점을 두어 자동차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고효율 철강, 고장력 철강, 내후성(weather-resistant) 철강, 고효율 철강 등을 생산했다.

에코머티리얼 개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합체 산업을 보면 플라스틱산업에 있어 유해물질 프리 재료, 할로겐 프리 난연제, VOC free 플라스틱 등이 대표적인 유해물질 프리 에코머티리얼이다.

에코머티리얼의 예

① 에코시멘트 : 에코시멘트는 일본의 타이헤이요-시멘트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자치도시의 폐기물을 이용해 생산된다. 이 폐기물은 소각재와 슬러지 두 가지 형태로 에코시멘트의 재료로 사용된다. 에코시멘트의 경우 대략 50%의 폐기물이 시멘트의 원재료를 대체한다[표1]. 에코시멘트를 사용함으로써 재사용이 불가능한 원재료의 사용 절감과, 외부환경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저감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에코시멘트에 대

한 LCA 수행결과에 의하면, CO₂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각각 최대 50%, 89% 줄일 수 있고, 매립지 1평방미터당 3만엔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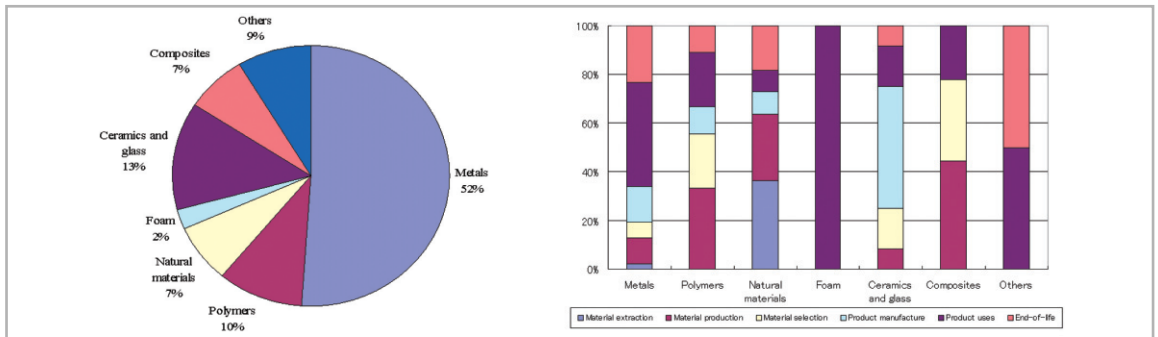
[표1] 에코시멘트와 포틀랜드 시멘트의 원료

Raw material	Ordinary Portland cement	Eco-cement
Lime stone	78%	52%
Incinerated ash	-	38%
Sewage sludge	-	9%
Clay	16%	-
Silica sand	4%	-
Iron resource	2%	-
Sodium carbonate	-	1%

② 자동차 산업의 초경량 금속 : 일본에서의 자동차 산업은 '에코자동차'의 일환으로 철, 비철금속,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에코머티리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 몇몇 연구들은 자동차 무게를 10% 줄임으로써 10~12%의 연비 개선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승용차의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에서 에너지 소비는 주로 차량 주행(약 75~80% 차지) 및 재료생산(약 15~20% 차지) 단계에서 발생한다. 철재는 자동차 무게의 대략 75%를 차지하는데, 즉 철재의 무게를 줄이게 되면 자동차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진다. 이는 인장강도가 큰 철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성의 저하 없이 얻어질 수 있다. ULSAB (Ultra-Light Steel Auto Body) 프로젝트에 따르면, 차량 바디는 23% 정도까지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승용차 무게 5% 정도 경량화가 가능하다. 게다가, 고효율 동력을 가능케 하는 재료의 사용으로 에너지 소비의 전체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맺음말

일본의 에코머티리얼 개발은 다른 많은 기술적 부분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초경량 철강, 가공이 용이한 철강, 형상 기억합금, 재생가능한 플라스틱(도요타 슈퍼 올레핀 플라스틱), 할로겐 프리 난연성 고분자, 에코시멘트 등은 향상된 에코머티리얼 기술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3] 일본 산업계의 에코머티리얼 상용화 현황



“우리가 알아야 할 REACH” – 환경부 발간 REACH 길라잡이

환경부에서 EU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해설서인 ‘우리가 알아야 할 REACH’를 지난 12월에 발간했다.

REACH법안은 2003년 10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래 2년여 간의 토론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 17일 의회에서 1차 독회 후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1차 독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규정에 대해 의회와 각료이사

회간 입장이 좁혀지면서 이들 두 규정에 대한 최종 법규 윤곽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 시점에서 국내 산업계를 위한 지침서가 발간된 것이다.

해설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REACH 제정 현황 및 법안 주요 골자를 비롯하여, 국내 산업계에 부여되는 의무 사항들을 도표와 그림을 사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REACH 시스템과 관련하여 그간 산업계의 문의 사항들을 Q&A에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법안의 방대한 양과 그 복잡함 때문에,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REACH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간한 해설서는 주

요 핵심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고 쉽게 요약·정리하여 REACH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법규를 이해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국내 관련업계의 REACH 대응 지원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 REACH 영향을 자가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EACH 산업계 경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법규 제정이 가까워지면서, 국내 관련 부처의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 산업계는 이러한 산업계 지원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좀더 효과적인 지원도구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환경부



독일, 웹기반 REACH 정보제공 시스템 개설



독일 연방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이 EU 차원의 단일 통합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www.reach-info.de)를 작년 12월 개설했다. EU가 추진중인 새로운 화학물질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REACH가 무엇인지부터, 누구에게 어떤 의무부담이 주어지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BA는 또한, REACH를 만족해야 하는 화학물질 제조자 및 사용자를 위한 브로셔 ‘REACH für Anwender (REACH for users)’도 함께 발간했다.

독일 연방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이 EU 차원의 단일 통합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

EU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법규 추진으로 인식되는 REACH는 ‘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을 줄인 표현이다. 2003년 법안이 제안된 이래, 많은 이해관계자들간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부는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법규제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UBA는 이것이 충분한 정보전달이 부족한 때문으로 보고 있고, 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REACH 브로셔는 새롭게 바뀐 화학물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좀더 많은 관련정보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 불식 등을 통해 해당 법규제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토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UBA는 그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독일 UBA

독일, 올해부터 의료기구에 HCFCs 사용금지

독일정부가 세계 최초로 의료기구에 오존층 파괴물질인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의 사용을 2006년 1월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천식 용 흡입기(metered-dose inhalers)와 같은 의료기구에는 그 사용이 허용된다.

독일 환경부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1998년 의료분야에서의 HCFCs 사용을 점차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출처 | 독일 환경부

EU, 2007년 6월부터 접착제 등에 톨루엔과 트리클로로벤젠 사용제한

접착제와 스프레이 페인트제품 등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toluene) 및 트리클로로벤젠(TCB, trichlorobenzene) 사용이 2007년 6월 15일부터 제한된다.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을 제한하는 지침 76/769/EEC의 제28차 개정지침으로 채택된 지침[2005/59/EC]에 따라 톨루엔과 TCB가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로 추가됐다. 동 지침에 따라 톨루엔 농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접착제 및 스프레이 페인트 제품의 시장판매가 금지되며, 트리클로로벤젠은 중간물질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도 0.1%

이상 함유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작년 11월 15일자로 정식 발효된 이 지침을 EU 각 회원국은 2006년 12월 15일까지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처 | EU 집행위

일본, 일본판 RoHS법안 WTO에 통보

2005년 11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세계 무역기구(WTO) 기술장벽위원회(CTBT)에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함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개정법률'(자원유효이용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지정자원 절약화 제품·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의 판단기준 성령)을 통보했다.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정 자원 절약화 제품 7개 제품(개인용 컴퓨터, unit-type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빨래건조기, 냉장고, 세탁기)과 지정 재이용 촉진 8개 제품(지정자원 절약화 제품 + 복사기)의 규제 대상 사업자에 종전의 생산자와 함께 수입판매 사업자를 추가했다. 또한 '판단기준 성령' 개정안에서도 시행령 개정 내용과 관련된 지정자원 절약화 제품 7개 제품 및 지정 재이용 촉진제품 8개 제품의 대상 사업자에 수

입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이들 제품에 포함되는 RoHS 규제 대상 6대 유해물질의 함유여부 및 함유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 회원국 회람기간은 통보된 날로부터 60일로, 관련 기업 및 정부는 2006년 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WTO, 일본 경제산업성

EU 자동차 재활용 형식승인 지침 발표

자동차 형식승인 심사기준에 부품 및 재료의 재활용·재생 가능률 기준을 포함하는 지침 [2005/64/EC]이 지난 12월 15일 발효됐다. 폐자동차처리지침(ELV)에서 규정하는 폐차 재활용 및 재생률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이 지침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는 신차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성·재생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침발효 후 3년 뒤인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신차는 규정된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률(85% 이상)과 재사용 및 재생가능률 기준(95% 이상)을 만족해야만 형식승인을 받고, 유럽 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출처 | EU 집행위

〈'전문가리포트'에 이어서〉

- 규제준수를 증명하는 문서, 조사방법과 그에 따른 검증결과 제시 요구
- 특정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고 통보

Penalty

- 영국 내에서 규제 위반 시, 다음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약식 기소 시 최대 £5,000 (현재)를 부과하며, 정식 기소될 경우, 벌금의 제한 없음(unlimited fine)
 - 규제당국에 규제준수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5단계(현재 최대 £5,000) 벌금을 부과

- 벌금부과를 면하기 위해 생산자는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
- 여기에는 제3자 기관의 과실에 대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제3자 기관명 및 claim을 제기한 사람의 소유정보를 수반해야 함)
- 법률 위반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기관 또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될 수 있음
- 협력업체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책임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된 모든 업체 역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공지사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친환경상품진흥원」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의 정보

- ① 1.18. ~ 1.20. 국제 전자기기 재활용 회의 (독일 함부르크)
- ② 1.22. ~ 1.25. EUEC 2006 (Electric Utility Environmental Conference) (미국 투슨)
- ③ 1.23. ~ 1.29. 개발도상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워크숍 (코스타리카 Rancho Matastal)
- ④ 1.24. 산업계의 WEEE 규칙 이행준비를 위한 워크숍 (영국 런던)
- ⑤ 1.26. ~ 1.27. 제2회 폐기물관리 재정 포럼 (영국 런던)
- ⑥ 2.1. ~ 2.2. 국제청정에너지기술 컨퍼런스 (CETEX Germany 2006) (독일 베를린)
- ⑦ 2.7. ~ 2.8.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REACH 대응 국제 컨퍼런스 (벨기에 브뤼셀)
- ⑧ 2.9. ~ 2.12. 2006년 바이오에너지 전시회 (이탈리아 베로나)
- ⑨ 2.14. ~ 2.15. 북미 플라스틱 재활용 컨퍼런스 (Plastics Recycling 2006) (미국 올랜도)
- ⑩ 2.28. 제3차 친환경화학제품 심포지움 (Greener Produc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영국 런던)

200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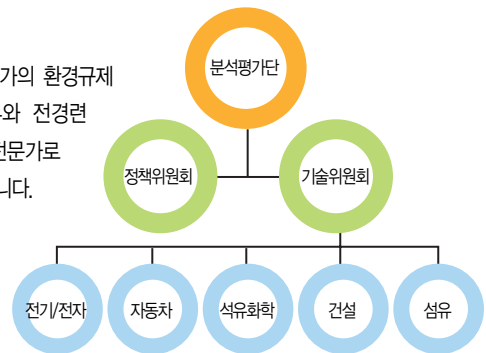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6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EN시스템운영체제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 (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친환경 상품진흥원,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친환경상품진흥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 02-358-6800 (#232) | 팩 스 : 02-358-8560 | 이메일 : jung60@koeco.or.kr

